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

발의연월일: 2024. 6. 3.

발 의 자:이훈기·오기형·이성윤

김영배 · 송재봉 · 문금주

이연희 · 김기표 · 안호영

황명선 · 강훈식 · 이재관

남인순 · 김영환 · 김남희

복기왕・양부남・김현정

황정아 · 정진욱 · 위성락

민형배 · 박홍배 · 이수진

서영교 • 박지혜 • 이건태

정일영 · 장종태 · 박균택

정을호 • 허종식 • 임호선

임미애 · 김정호 · 신영대

어기구 • 신정훈 • 이기헌

이강일 · 차지호 · 권향엽

이용우 · 김원이 · 박민규

박희승 · 김용만 · 김남근

염태영 · 모경종 · 윤종군

김 윤ㆍ이학영ㆍ조승래

김태년 • 박해철 • 박선원

정성호 · 오세희 · 전진숙

이상식 • 김태선 • 김 현

안태준 · 허성무 · 부승찬

유동수·조계원·이정문 김교흥·강유정·이재강 조인철·박성준 의원 (7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 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방송공사의 정 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.

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, 사장 선출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며,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더욱 더 보장하고자 함(안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46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9항ㆍ제10항, 제50조의2 등 신설).

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"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"를 "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"로 한다. 제46조제2항 중 "11人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理事는"을 "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"로, "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"를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대응 조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

사람 6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 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 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 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다만,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- ①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

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0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 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  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가 정한다.

제106조제1항제1호 중 "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자"를 "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

하지 아니한 자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 및 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 및 사장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. 다만, 이 법 시행 당시의 이사 및 사장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"추천"을 "임명제청"으로 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第4條(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) 第4條(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) ① ~ ③ (생 략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 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 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----- 방송편성규약을 公表하여야 한다.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 여야 한다. 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) ① (생 략)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. ----21명-----.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역성 및 사회----------다음 각 호에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.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 이 임명한다.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<신 설>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.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
  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천 2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

④ ~ ⑥ (생 략)

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. <<단서</td>신설>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
(8) -----

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
⑩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사

⑧・⑨ (생략)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・議決하다.
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8. ~ 15. (생 략) ② (생 략)

<신 설>

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① · ② (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)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------

\_\_\_\_\_

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- 8. ~ 1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50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

第106條(罰則) ① 다음 각 호의 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 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- 1.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 여 放送編成規約을 <u>제정하지</u>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<u>者</u>
- 2. ~ 6. (생 략)

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
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
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
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
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
로 추천하여야 한다.
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
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
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
를 구성하여야 한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
정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
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
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
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5106條(罰則) ①
1
제정
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
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
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